

제218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
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유승용 의원 발의】



2019. 12. 5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84호로 2019년 11월 13일 유승용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에 5.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여 그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에 5.18민주유공자 추가
(안 제3조)

나.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에 5.18민주유공자 추가
(안 제10조 및 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19. 11. 18. ~ 11. 22.)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건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에 5.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여 그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임.

- 주요 내용은
 - 안 제3조,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대상,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에 5.18민주유공자를 추가 규정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.18민주유공자를 예우와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타 국가유공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일부 개선함으로써 그 노고에 다소나마 보답하기 위한 것으로,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

5.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

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·18민주화운동의 민주·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 대상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(이하 "5·18민주유공자"라 한다)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1.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: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·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
2.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: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5항에 따른 장애등급(이하 "장애등급"이라 한다)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
3.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: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